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 중 22명(고위나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학예연구관 4명, 학예연구사 9명)을 증원하며, 나머지 2명은 국가보훈처 정원 2명(7급 2명)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 범위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급증과 안장대상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나머지 1명(5급 2명)은 다른 국립호국원의 정원을 재배치 활용하고, 국가보훈처 하부조직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2021. 7. 13. 공포, 2022. 1. 1. 시행)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가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고, 보훈선양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보훈선양국 내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증원 인력(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1호 중 “군인사망보상금과 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을 “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호국·보훈의 달 행사 종합 기획·조정

7의2. 보훈 상징물 활용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독립·호국 및 민주화관련 국내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3의2.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에 관한 사항

4의2. 호국·보훈의 달 계기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독립운동”을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전 참전 관련 해외 시설의 건립”을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건립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백범김구기념관 등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15.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감독

제15조제1항 중 “국립산청호국원장 및 국립괴산호국원장”을 “국립산청호국원장, 국립괴산호국원장 및 국립제주호국원장”으로 한다.

제3장의2(제1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5조의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운영지원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연구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념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조직·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기념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설·기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전시실의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운영
 5. 기념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6.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7.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8.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9.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수집·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3.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4. 소장자료의 대여 · 복제 · 복사 · 모조 · 촬영 등의 허가
5.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8.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 · 운영
9.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 · 연구 · 발굴 · 고증
및 분석
12.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13. 학술 · 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14. 기념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운영
15.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16.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 · 보급
17. 기념관 문화 사업 기획 · 운영

제22조제1항 중 “대변인 및 제대군인국장”을 “대변인, 제대군인국장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2 부산지방보훈청의 국립묘지관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산청호국원 및 국립제주호국원

별표 3 중 총계 “313”을 “311”로 하고, 일반직 계 “310”을 “308”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0”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0”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17”을 “15”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20”을 “318”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5”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0”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0”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20”을 “18”로 한다.

별표 9의3 중 총 계 “10”을 “9”로 하고, 일반직 계 “10”을 “9”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1”로 한다.

별표 9의5를 별표 9의6으로 하고, 별표 9의5 및 별표 9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0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2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5]

국립제주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별표 9의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24
일반직 계	2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9

[별표 13]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 관련)

1. 국가보훈처

조직	정원	평가기간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2022년 7월 26일까지

2.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	7명 (학예연구관 2명, 학예 연구사 5명)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	7명 (8급 1명, 학예연구관 2명, 학예연구사 4명)	2024년 6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상정책국) ①·② (생략)	제7조(보상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군인사망보상금과 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의 사망·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지도·감독</u>	11. <u>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u> ----- ----- -----
11의2.·12. (생략)	11의2.·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선양국) ①·② (생략)	제8조(보훈선양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호국·보훈의 달 행사 종합 기획·조정</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의2. 보훈 상징물 활용에 관한 사항</u>
8. ~ 13. (생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u>국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5. ~ 17. (생략)	15. ~ 17. (현행과 같음)

④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2. 3. (생략)

<신설>

4. 호국·보훈의 달 행사 종합
기획·조정

<신설>

5. (생략)

6. 보훈의 상징(나라사랑 큰 나
무) 확산 등 각종 보훈행사

7. ~ 10. (생략)

⑤ 현충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
기념관 등 각종 기념관 관리
·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생략)

8.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 활
용에 관한 조사·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④ -----
-----.

1. (현행과 같음)

1의2. 독립·호국 및 민주화관
련 국내외 사적지 탐방에 관
한 사항

2. 3. (현행과 같음)

3의2.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
손 초청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4의2. 호국·보훈의 달 계기 포
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10. (현행과 같음)

⑤ -----
-----.

1. ~ 5. (현행과 같음)

6. 백범김구기념관 등 국유재산
으로 관리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7. (현행과 같음)

8. ---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

9. 한국전 참전 관련 해외 시설
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한국전 참전 관련 해외 시설
활용에 관한 조사·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1. · 12. (생략)

13. 독립기념관 발전계획의 수
립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14. (생략)

<신설>

제15조(국립호국원) ① 국립영천
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산청호
국원장 및 국립괴산호국원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
로 보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9.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건립 지원 ----

<삭제>

1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현행과 같음)

15.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
관의 지도·감독

제15조(국립호국원) ① -----

----- 국립산청호국
원장, 국립괴산호국원장 및 국
립제주호국원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5조의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
부기념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
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

관에 운영지원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연구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념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조직·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기념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

스텝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설·기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전시실의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운영

5. 기념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6.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7.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8.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9.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수집·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3.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4. 소장자료의 대여·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5.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8.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
9.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

	<u>굴·고증 및 분석</u> <u>12.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u> <u>13. 학술·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u> <u>14. 기념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u> <u>15.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u> <u>16.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보급</u> <u>17. 기념관 문화 사업 기획·운영</u>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u>대변인 및 제대군인국장</u> 을 말한다.	① ----- ----- ----- <u>대변인, 제대군인국장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평가대상 조직) <u>국가보훈처</u> 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23조(평가대상 조직) <u>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u> -----.
총리령 제10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0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일반직 5급 1명의 정원은 <u>2022년 2월 28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간) ----- ----- ----- ----- ----- ---- <u>2024년 2월 28일</u>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13</u>	<u>311</u>	-2
·	·	·	
·	·	·	
일반직 계	<u>310</u>	<u>308</u>	-2
·	·	·	
·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u>			
<u>학예연구관</u>	<신 설>	<u>20</u>	+20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20</u>	<삭 제>	-20
·	·	·	
·	·	·	
행정주사보	<u>17</u>	<u>15</u>	-2
·	·	·	
·	·	·	

[별표 3의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20</u>	<u>318</u>	-2
•	•	•	
•	•	•	
일반직 계	<u>317</u>	<u>315</u>	-2
•	•	•	
•	•	•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u>			
<u>학예연구관</u>	<u><신 설></u>	<u>20</u>	+20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20</u>	<u><삭 제></u>	-20
•	•	•	
•	•	•	
행정주사보	<u>20</u>	<u>18</u>	-2
•	•	•	
•	•	•	

[별표 9의3]

국립산청호국원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u>	<u>9</u>	-1
일반직 계	<u>10</u>	<u>9</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			
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u>	<u>1</u>	-1
·	·	·	
·	·	·	